

정책/POLICY BOARD OF EDUCATION OF MONTGOMERY COUNTY

관련 항목: ACA, ACH, ACI, GAA, GCA-RA, GFB-RA, GEA-RA
 책임 사무실: Board of Education;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교육위원회 MCPS 지도자 임명 Board Appointment of MCPS Leaders

A. 목적

모든 MCPS 학생과 교직원의 성공을 위해 최고의 자질, 진실성, 경험 및 헌신을 갖춘 지원자의 리더십 직책 지원을 장려합니다.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 교육감의 추천에 따라 Montgomery 카운티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가 임명하는 리더십 직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실사, 실사, 교육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 지원자 및 후보자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시에 리더를 임명하는 효율적인 인터뷰 및 임명 절차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약속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구 전반의 요구에 대응하는 리더십의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학교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추천에 포함될 후보 정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효과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교육위원회 의사결정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B. 이슈

Maryland 법률에 따라 다음 권한을 설정합니다 –

1. 각 Maryland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서면 추천에 따라 직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및
2. 교직원을 학교 내 직위에 배치하고 학교 및 교육구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전근할 수 있는 카운티 교육감의 권한

C. 입장

1. 교육위원회¹는 다음과 같은 교육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직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유치, 적극적으로 채용 및 임명함으로써 모든 학생과 직원의 성공에 대한 약속을 확인합니다.
 - a) 모든 학교와 직장은 이해, 존중, 정중, 수용 및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이루기 위한 교육위원회의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모든 개인과 그룹 간의 존중 문화를 구현합니다.
 - b) 지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c) 지도자는 교육, 학습, 운영에서의 우수함을 이룩하고, 참여와 리더십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성 학습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습니다. 및,
 - d) MCPS 는 모든 직위에 최고 수준의 직원이 있는 긍정적이고 협력적 환경의 기관입니다.
2.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리더십 직위는 급여표에서 "O" 이상으로 분류된 직위입니다.
3.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구 전반의 요구에 대응하는 리더십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 년 내내 효율적인 인터뷰 및 임명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a) 급여표에서 "O" 이상으로 분류된 직위에 대하여 교육감은 부교육감급 이상의 지도자로 구성된 임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감에게 추천을 합니다.
 - b) 적절한 후보자를 찾고 적시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직책을 맡을 리더를 고용하는 인터뷰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채용 절차는, 가능하고 적절할 때마다, 공석 또는 공석이 통지되는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¹ 교육위원회 Policy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 Policy GAA, 자율개선조직의 긍정적 업무환경(Positive Work Environment in a Self-renewing Organization); Policy ACF, 학생의 성적 비행 및 성희롱(Sexual Misconduct and Sexual Harassment of Students); Policy ACI, MCSP 고용인의 성희롱(Sexual Harassment of MCPS Employees); Board Policy ACH, 직장에서의 불링/왕따(Workplace Bullying)

- (1) 임명위원회는 연중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원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임명 위원회 내 피지명인이 해당 위원회 위원을 대표하도록 임시로 임명됩니다.
 - (2) 교육위원회는 현재 직원, 임시 시간제 직원 또는 컨설턴트가 45 일 이상 직무 대행 자격으로 공석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관리자 공석을 비공개 세션회의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 c) 학교 교육감은 다음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 (1) 최소 및 선호 자격에 대한 초기 심사를 기반으로 적격 후보자를 식별합니다.
 - (2) 지원서, 면접 위원회 및 임명위원회의 초기 심사에 관련된 개인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 (3) 교육위원회 Policy ABA, *지역사회의 참여(Community Engagement)*에 따라 인터뷰 패널에 커뮤니티의 다양성과 경험을 직위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이해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합니다.
 - (4) 적절하게 일정, 진행 상황 및/또는 피드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선정되지 않은 지원자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와 적시에 소통합니다.
 - (a) 후보자는 교육위원회가 임명한 직책에 지원할 때 필요한 단계와 예상 일정을 미리 통보받습니다.
 - (b) MCPS 는 학교 기반 및 교육청 중앙 사무실 기반 직책 면접 패널을 위해 이해관계자 범주에 대한 표준을 수립합니다.
 - (c) MCPS 는 지원부터 임명까지 예상 소요시간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예비 후보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 (5) 추천 또는 신원조회 결과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수행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6) 가능하면 패널 인터뷰 수를 두 회로 제한합니다. 교육감이 2 차 패널 인터뷰를 실시합니다.

d)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추천한 후보자를 고려하고 리더십의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달력연도 동안 정기적인 간격으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5.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원자 및 후보자와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예비 후보자 심사에 대한 실사, 인터뷰 과정 및 최종 후보자에 대해 교육위원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a) 비공개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1) 인터뷰 패널 – 인터뷰 패널의 구성, 인터뷰에 응한 후보 중 각 패널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자, 인터뷰 과정에 대한 패널 참가자의 평가.

(2) 임명 위원회 – 인터뷰 패널의 추천; 위원회가 검토한 후보자의 자격(예: 학업 준비, 업무 경험 및 전문성 개발 문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 제기된 우려 사항이나 질문을 포함한 위원회 "설명/보고" 메모.

(3) 교육위원회에 추천된 후보자가 임명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C.5.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하게 검증되었으며, 교육위원회에 제공된 정보가 진실이고, 정확하며, 아는 한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chief of the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및 교육감이 지정한 다른 임원진의 증명 편지.

b) 심사

추천 후보자에 관해 교육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는 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다음과 같이 효과적인 교육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한 필수 정보가 포함됩니다:

(1) 자격 요건(예: 학업준비, 근무경력 및 전문성 개발)을 충족.

(2) 지문채취를 포함한 사용 가능한 범죄자 등록과 일관된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를 완료.

- (3) 후보자에 대한 조사의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직위에 대한 후보자는 고려 않습니다. 이행 규정은 조사 대상이며 이 요건에 적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불만 또는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교육위원회에 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D. 바라는 결과

- 1. 교육위원회는 승인을 위해, 교육위원회에 추천된 MCPS 지도자에 대해 효과적인 교육위원회 심의와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위해 기회를 적시에 가져야 합니다.
- 2. MCPS 커뮤니티는 선발 및 임명 과정의 무결성에 대해 최고의 신뢰를 가져야 하며, MCPS 리더는 최고의 자질, 정직성, 경험을 갖고 모두의 성공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E. 전략의 시행

교육감은 본 정책에 설명된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 또는 기타 행정 절차를 수립하며 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1. 가능할 때마다 3 개월 이내에 "대리(acting)" 직위를 채용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적시에 식별;
- 2. 가능한 경우, 교육구 전반의 요구에 대응하는 리더십의 연속성과 최대 2 개월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적시에 리더를 임명하도록 하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뷰 및 임명 프로토콜
- 3. 모든 MCPS 학생과 직원의 성공을 위한 최고의 수준, 청렴, 경험, 헌신을 육성하기 위해 리더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기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 성장 시스템.

F. 불만/이의제기

교육위원회 임명 과정에서 고용 차별을 주장하는 모든 직원은 민권위원회 또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G. 검토와 보고

이 정책은 교육 위원회의 평가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열을 받습니다.

관련 자료: Annotated Code of Maryland, Education Article, Section 4-103 과
Section 6-201

정책 변경사: 새 정책 결의안 No. 303-24, 2024 년 6 월 11 일.

MCPS 차별금지 성명

Montgomery County Public Schools(MCPS)는 인종, 민족, 피부색, 혈통, 출신국, 국적, 종교, 이민상태, 성,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성 지향, 가족 형태/부모 상태, 결혼 상태, 나이, 능력 상태(인지, 사회/정서, 신체), 빈곤, 사회경제적 상태, 언어, 또는 합법적이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성향 또는 소속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모두를 위한 평등, 포용, 수용을 만들고 육성하고 촉진하려는 우리 공동체의 오랜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교육위원회는 혐오를 조장하고 학교 또는 교육구 운영 또는 활동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언어의 사용 및/또는 이미지와 기호, 상징의 표시를 금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육위원회 정책 ACA, 차별금지, 평등 및 공평과 문화적 능력(Nondiscrimination, Equity, and Cultural Proficiency)을 봅시다. 이 정책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중요하며 특히, 개인의 실제 또는 여겨지는 인적 특성으로 교육적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위원회의 신념을 단호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공평성이 암묵적 편향, 부당한 이질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 정당화되지 않은 다른 관행, 교육과 고용의 기회의 평등을 방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장벽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MCPS는 또한,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트와 다른 지정된 청소년 그룹에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A. 다음은 모든 공공 및 공공 자금 지원 학교와 학교 프로그램이 이를 준수하여 운영하는 Maryland주 정책입니다.

(1) (1) 1964년 연방민권법 제6호(Title VI of the 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2) Title 26, Subtitle 7 of the Education Article of the Maryland Code에는 공공 및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와 프로그램은 다음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별, 나이, 출신국, 혼인상태,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또는 장애에 근거한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차별.

(b) 개인의 인종, 민족성, 피부색, 종교, 성, 연령, 출신국, 결혼상태, 성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장애로 예비 학생의 등록 거부, 재학생의 퇴학, 재학생, 예비 학생 또는 재학생 또는 예비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특권 박탈; 또는

(c) 불만의 결과에 관계없이 프로그램 또는 학교가 학생을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징계, 처벌을 발동하거나 기타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연락처 정보와 연방, 주 또는 지방 관련 요건은 버전마다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본 문서에 포함된 진술과 참고자료보다 우선됩니다.

최신 정보는 온라인 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www.montgomeryschoolsmdwww.montgomeryschoolsmd

MCPS 학생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MCPS 교직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질문 또는 불만사항***
Director of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SWC@mcpsmd.org	Human Resource Compliance Office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1973년 504 장애법(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학생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라 조정이 요구되는 교직원
Section 504 Coordinator Office of School Support and Improvement Well-Being and Student Services 850 Hungerford Drive, Room 257, Rockville, MD 20850 240-740-3109 504@mcpsmd.org	ADA Compliance Coordinator Office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of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5 West Gude Drive, Suite 2500, Rockville, MD 20850 240-740-2888 DCI@mcpsmd.org
학생 또는 교직원***에의 성희롱 등, Title IX에 해당하는 성차별에 관한 조사나 불평사항	
Title IX Coordinator Office of District Operations Student Welfare and Compliance 15 West Gude Drive, Suite 200, Rockville, MD 20850 240-740-3215 TitleIX@mcpsmd.org	

*본 통지는 개정된 연방 초등 및 중고등 교육법을 준수합니다.

**본 통지는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Section 13A.01.07.을 준수합니다.

***차별에 관련된 민원은 다음과 같이 다른 기관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Baltimore Field Office, GH Fallon Federal Building, 31 Hopkins Plaza, Suite 1432, Baltimore, MD 21201, 1-800-669-4000, 1-800-669-6820 (TTY); Maryland Commission on Civil Rights (MCCR), William Donald Schaefer Tower, 6 Saint Paul Street, Suite 900, Baltimore, MD 21202, 410-767-8600, 1-800-637-6247, mccr@maryland.gov; Agency Equity Officer, Office of Equity Assurance and Compliance, Office of the Deputy State Superintendent of Operations, Maryland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0 West Baltimore Street, Baltimore, MD 21201-2595, oeac.msde@maryland.gov; or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OCR), The Wanamaker Building, 100 Penn Square East, Suite 515, Philadelphia, PA 19107, 1-800-421-3481, 1-800-877-8339 (TDD), OCR@ed.gov, or 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안내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와 미국 장애인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에 따른 대체 형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MCPS Office of Communications, 전화번호 240-740-2837, 1-800-735-2258 (Maryland Relay) 또는, PIO@mcpsmd.org로 연락하여 요청합니다. 수화 통역 및 기타 특수 보조 등의 제반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MCPS의 Office of Interpreting Services, 240-740-1800, 301-637-2958 (VP)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 또는 MCPSInterpretingServices@mcpsmd.org로 연락합니다.